

공동주택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

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

■ 인지세 납부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분양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 납부하여야 합니다.
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(2021.01.01 부터 시행)으로 인지세를 미납부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이점 참고하시어 분양 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지참하시기 바라며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인지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납부대상 관련법령 :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▷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.
- ▷ 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계약서 별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

■ 인지세 납부 기한

- ▷ 납부일 및 기한 : 분양계약 체결일 / 분양권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(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·납부)
※ 계약일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가산세 부과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

- ▷ 수입인지 사이트(<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>)에서 구입
- ▷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, 보관

■ 인지세 납부액 및 가산세 안내

구분	인지세 세액	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1,000만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	2만원  발코니 확장
	3,0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4만원
	5,0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7만원
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  공동주택
	10억원 초과	35만원

구분	기간	가산세액
발코니 확장	3개월 이내	납부 세액의 100%
계약일 이후 경과에 따른 가산세액 비율	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	납부 세액의 200%
	6개월 초과	납부 세액의 300%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– 전자수입인지(e-revenuestamp.or.kr/) 또는 네이버, 다음 등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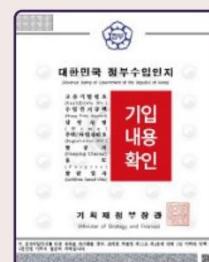


④ 구매 – 납부정보 입력

※ 공동주택, 발코니 확장
인지세 각각 납부



③ 출력



※ 전자수입인지는
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
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
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